

기고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언론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에서 대낮에 흥기 난동을 일으키거나 광주 대학병원에서 결박된 침상에 불을 지르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돌봄에 관한 법적 미비함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관련 기본법인 '정신보건법'이 처음 개정된 것은 1995년이다. 학교보건법이 1967년, 모자보건법이 1973년에 생긴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입법이다.

초기 정신보건서비스 주체는 사설기관이나 종교 기관을 중심으로 한 격리 시설이었다. 1980년대에 주요 정신병원들이 설립되고 요양시설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치료가 아닌 격리 위주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당시 격리는 대부분 비자의적인 조치의 결과로서 인권침해가 상당했다. 1987년 폐쇄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사회문제화로 인해 1995년에서야 최초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정신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정신건강복지법' 이런 이름으로 20여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5년 당시에도 그랬지만 2016년의 정신보건법 개정의 가장 첨예한 논쟁은 정신질환자의 자유권과 치료권의 문제이다. 강제 입원을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구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치료권의 제공으로 볼 것인가.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비자의 입원,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친 등의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괴고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 입원을 의미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대해 2016년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국제연합(UN)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간 수용시설

에서의 열악한 치료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입원 요건이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보건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과도한 요건 강화로 인해 치료권의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전에는 비

자의입원의 기준을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 질환 이 있고, '자제나 타제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원의 절차적 통제도 강화되었 다. 이전에는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갖추면 추가 심사 없이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했으나 입원 3일 내로 입원자의 정보를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고하고, 2주 내로 탄병원(국립립병원 혹은 지정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차 진단 전문의)가 입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을 찾아보기 어려운 엄격한 규제이다.

현장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의 자유 권리와 치료권 향상에 비판적이다.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해온 의사의 소견을 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가 다른 소견을 낼 만한 환자의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그럴만한 의사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초발성 치료 등에 있어서도 경우

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자제의 위험이 발생할 때까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등 질환의 예방과 증증도에 따른 다양한 치료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자가결정권과 치료권은 상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해답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응급, 초발, 재발, 만성 등의 질환의 경도와 유형에 따라 상급 정신 병원에서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공공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돌봄, 가정에서의 돌봄까지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케어와 치료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역량 강화와 전폭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지역사회 정신보건 역량이 보다 신속하게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책은 한 번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선진국들도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정신보건 서비스체계가 전화해 갔다.

치안과 공공의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할 것인가, 치료를 위해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야 할 것인가. 부랑아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했듯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이 확보될 때 질문 들에 답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社說

보호구역내 불법주차장 없애야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6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행하고 있는 지역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주민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이내에 문을 닫는 곳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다.

아울러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 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차량화재 주의해야

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량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에는 외부 기온도 오르지만 차량 내부는 밀폐되어 90°C 이상까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점화원만 있으면 급격한 연소와 함께 인근의 가연물로 연소 확대된다.

또한, 여름철에는 장시간 운행으로 차량의 결함이나 타이어 마모 정도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전에 세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최근 발생했던 BMW차량 화재를 계기로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차량화재는 약 3000여 건으로 50%는 승용, 승합차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운행 중인 통근 버스와 주차되어 있던 텁크트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운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차주에게는 안타까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량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 자체결함, 무더위에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과열 또는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배선 불량, 브레이크 계통 불량과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서는 배터리 주변 가연물의 유입과 배선 불량 등 다양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각 종오일, 냉각수와 타이어 상태점검, 엔진룸 및 차량 배선 수시 점검, 냉

데리 상태 및 내부 가연물 유입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강한 햇볕 아래에 주차할 때에는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 두거나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때는 운전자의 세심한 점검과 관심이 중요하며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혹시 모를 차량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여름철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전후 철저한 사전점검을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총태 / 영암소방서 구조대장 소방경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